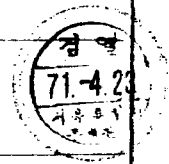


공
고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제 214	(결 과 번 호)	공고제 83호	권력규정	13조 12항
처리기간		결	정	제	자
시행일자	71.4.21	간	신	3	장
보존년한		시	장		
보조 기 관	라수리장 형성시장 처리시장	71.4.20	법 부 하 장 (공 고 안 결 재)	시 민 라 수 리 장	
기안책임자		조			
경 수 취	유 신 조	발 신	공 제		
제 목	각 안 장 조				
제 1 안 내역결재					
1. 전경부고시 제 2286호 (66.3.28)로 사출동별도시 계획사업으로 인가고시되어 70.6.5 쪽공회 장미전 라수처리장 구역 내의 미개발 용지 및 지장물(시민병충구터 (2.3필)에 대하여 1970.5.8 당시 시유재산 산의회에서 결정된 용지매입가격에 의거 그동안 수차에 걸쳐 용지소유자 에게 매매가격의 용지 및 매매증서 발급하였으나, 현재까지 이에 응응하고 있음.					
2. 따라서 47기 일처리장 공신결현상 매매수 출자 및 지장물 에 대하여, 부응하 아를 수용하고리 도시계					



0201-1-1A
1970. 11 10. 승인

190mm x 268mm 백 상 지 50g/cm²
(서울특별시청 청정 직언보도권 인쇄)

제 2 조의 규정이 되기 이전과 같이 세목 공표권과
 하여서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제 2 조 안
 건설부 고시 제 2286호 (66. 3. 28)로 고시된 당시의
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2항
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2항

도시계획법
 제 12 조 제 2항

서울특별시 공민 제
 건설부 고시 제 2286호 (66. 3. 28)로 고시된 당시의
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2항
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2항
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2항
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2항

1. 사업명 : 정비권 하수처리장 건설
 2. 재산의 표시 : 별지 조서와 같음.
 3. 공표기간 : 1971. 4. 23. ~ 1971. 5. 23.
 (10일간)

1971. 4. 23.
 서울특별시 시장 양 덕 시.

제 3 조 안
 수선, 수선제 정조.
 제 목, 세 목 공 고.

건설부 고시 제 2286호 (66. 3. 28)로 고시되어 기.
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2항
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2항
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2항
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2항

1. 사업명 : 정비권 하수처리장 건설
 1. 수선제 재산의 표시 : 별지 조서와 같음
 2. 공표기간 : 1971. 4. 23. ~ 1971. 5. 23. (10일간)

수선제, 별지 조서의 소유권.

제 4 안

수 신 . 공보실장

발 신 . 건설국장

제 목 . 시보 게재 의뢰

1. 별첨 제안이 의하여 정미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양사가 수용권처하는바,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이 이기 이종 공인하였기 총리로부터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시용공고문 사본 1부

나. 제안도서 1부

제 5 안

수 신 . 건설부장관

제 목 . 시용공고 결과 보고

건설부 2시 제 2286호 (66. 3. 20) 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 ~~제 2286호~~ (정미하수처리장 건설) 사업 ^{계획}인가 되어 70. 6. 5 착공한 정미하수처리장 구역 내의 ~~이~~ 매입 용지 및 지장물 (세면평용주역 193평) 이 대하여 그동안 수차에 걸쳐 토지 소유자에게 매입 용지 총리 및 매입 ~~용지~~ 동용 하였으나 현재 까지 이에 복응 하진 못하므로 부득히 이를 수용표지 별첨한 같이 시용공고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.

제 목 . 시용공고 사본 2부

2. 토지주서 2부

3. 지적도 2부 끝

건설부 고시 제 2256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(정계천 마수저미장 건설) 사업 실시
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6 조 및 동 시행령 제 5 조의 규정에 의거
다음과 같이 인가함.

1966. 3. 28.

건설부장관 권여용

다
음

1. 사업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(정계천 마수저미장~~행~~설사업)
2. 계획자 서울특별시장
3. 시행지구 서울특별시성동구 장안평근자동, 송정동 일부
4. 시행목표 1 일 250,000 의 마수저미
5. 시행기간 자 1966년 3월 28일
차 1970년12월 31일

관계도면을 서울특별시장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종람에
공한다.

5-4
64

도 지 로 서

자산의 소재	종류 또는 지목	평수	평당 단가	소유자명
성동구 근 자동 205-835	답	12	2,000	성동구 와양동 132 정기천
송정동 74-232	"	0	2,000	산정동 70-80 이기영
" 74-298	"	0.5	2,000	"
" " 74-32	"	3	2,000	" 송정동 74-205 김봉백
" " 74-205	"	780	2,000	" " "
" " 74-191	"	137	2,000	" " "
" " 74-206	"	308	2,000	" " "
" " 74-207	"	205	2,000	" " "
" " 74-205	주 역	19 ³³	16,000	" " "

5-5
65